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20. 12.



기본방향

- ◇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의 집중 관리만으로는 정책 추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바, 건강 교육 및 건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학생건강관리 정책과 더불어, 학교 내 환경 위생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관리,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학생 영양관리 정책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또한,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함
- ◇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건강증진 관련 2021년 주요 정책방향을 안내하니,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자체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시 동 정책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람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건강관리

- ◆ 보건교육 내실화
- ◆ 학교 성교육 내실화
- ◆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 ◆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 ◆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환경관리

-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 학교 석면관리 강화
- ◆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강화
- ◆ 학교시설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급식관리

-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I. 건강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3
2. 학교 성교육 내실화	5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8
4.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11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4
6.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17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19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21

II. 환경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5
2. 학교 석면관리 강화	31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35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41

III. 급식관리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50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53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57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64
5.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67
6.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70
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72

IV.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76
2. 보고 목록	79
3. 보고 서식	82
※ 참고자료	109

I. 건강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2. 학교 성교육 내실화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4.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6.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1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교육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 추진방향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중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교육감(장)은 각 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교재 및 교구지원,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시·도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등 지원
 - 단순 지식 중심의 교사연수 지양, 교육과정, 교수법 등 실질적인 연수운영
 - 장학(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 (저작권재산권 유의)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2 학교 성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발달단계에 알맞으며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 등 적극지원

□ 추진 근거 및 경과

- 관련 법령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년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실시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운영모형 개발·보급('15. 2월)
 - 학교에서 참고하도록 안내한 성교육 자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내용 반영·수정('15.7/ '15.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한 재검토 연구('15.10~'16.9)결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수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교육자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도록 교육청에 이관('17.4월)
 - ※ 주요민원: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 소수자(동성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의 이견(표준안 철회·개정/ 현행 표준안 유지) 지속
 -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여 운영('19년)
 - 사회관계장관회의('20.7.29.,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결과 디지털성범죄가·피해 예방 내용 반영

□ 추진방향

-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체계적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 성교육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관련교과 협의회 구성,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담당교사 체계적 양성·관리)** 반드시 단위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교육(지원)청 단위 역량 있는 교사 중 강사요원으로 양성하여 전문 강사 양성·활용

- ※ 전문 강사 운영 시 근무학교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시·도교육감은 성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기본·심화)을 개설·운영하고 성교육 담당교사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 단순 성(性) 지식 중심의 연수 지양,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법 함양을 위한 연수(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용)
- ※ 시·도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필요사항 조치
- 시·도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학교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개발·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 교과연계 성교육 지도계획안, 교육자료 등 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결과 학생건강 정보센터를 통해 공유(저작권재산권 유의)

□ 성교육 시 유의사항

- 교사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여 지도하며,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고, 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 학교의 실태와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
- 담당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지도
- 강의식 지식전달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기회 확대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 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사전에 교육 내용 및 지도안을 확인하고 담당교사 임장 지도

붙임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구분	원안					수정안	
초등학교학년 (10쪽) 3.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가. 초등학교 성교육 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내용	활동내용	
	사회와 문화	(3)대중매체와 성	인터넷의 편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성 상품화와 성폭력 사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비하며 대중매체 속에 나타나는 불편한 광고를 바로잡아 잘못된 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	SNS 편리성과 위험성	·SNS를 이용한 성폭력사례 ·SNS를 이용한 성폭력 대처와 예방법	·SNS를 이용한 성폭력사례 ·SNS를 이용한 성폭력 대처와 예방법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중학교 (14쪽) 3.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내용	활동내용	
	사회와 문화	(1)폭력의 예방과 대처	성폭력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고 성폭력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에 따른 대처방법을 익혀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른다.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성폭력의 사례별 대처 방법 ·성폭력의 예방법 ·성폭력에 대한 사례 분석 ·성폭력 사례별 대처 방법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례 ·성폭력의 사례별 대처 방법 ·성폭력의 예방법 ·성폭력에 대한 사례분석 ·성폭력 사례별 대처방법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고등학교 (18쪽) 3.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 라. 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 3) 활동내용	영역	주제	목표	내용 요소	활동내용	내용요소	활동내용
	사회와 문화	(2)성과 표현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및 폐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매매와 상품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예방법을 익혀 사례별 대처능력을 기르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폐해 성매매, 성 상품화의 폐해 성매매, 성 상품화 원인에 따른 예방법 성매매, 성 상품화 사례별 대처법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성매매, 성 상품화의 폐해 ·성매매, 성 상품화 원인에 따른 예방법 ·성매매, 성 상품화 사례별 대처법	·성매매와 성 상품화,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성매매, 성 상품화, 디지털성범죄의 폐해 ·성매매, 성 상품화, 디지털성범죄 원인에 따른 예방법 ·성매매, 성 상품화, 디지털성범죄 사례별 대처법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제한
 -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 <참고>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년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다음 학년도(21)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나. 검사결과와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다.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을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4 학생 정신건강 관리강화

□ 기본방침(배경)

-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지원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사회(가정 포함) 전문기관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학교 역량 제고

□ 추진 근거 및 현황

- 관련 규정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보건법」 개정(13.12.30)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책무 강화
- 학교정신건강정책 추진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학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 여전히 교사 전문성 결여, 의도적 검사 조작, 교사에 의한 검사결과 유출, 학부모 치료 거부, 자살위험 등 관심군 학생 관리 미흡 등의 한계

□ 추진방향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정서·행동문제 조기발견

- (검사대상) 초(공민) 1·4학년, 중(고등공민)1학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 기타 학년 학생은 이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등 추수관리 지속
 - ※ 학교 내·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승급 및 분반 등에 따른 학생관리 공백 방지대책 마련·추진
- (검사절차)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 중등 AMPQ-III)를 사용하고 기타 표준화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 실시 지양
 -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시 관심군 대상 표준화도구 적용 가능

-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실시 가능)
- (검사시기) 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실시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중요 유의 사항]

- ▶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이 학년승급, 전·출입 등으로 인한 학생관리(전문기관 2차 조치 포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재검사, 관련자료 확인 및 학생 관리 철저
- ▶ 학생 검사결과 통보 시, 검사 결과지 및 관리(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재학 중 학생관리 자료로 활용, 용도 소멸 즉시 폐기(파쇄)
- ▶ 온라인 검사시스템 결과와 달리 변동사항(관심군↔정상) 적용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중 처리, 담당자 주관적 견해에 따른 변경 지양
- ▶ ‘학교폭력 피해사례(별도문항)’ 응답자의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도록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인계
- ▶ 당해 연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기간 이후 개교한 경우에는 전입생 관리 방안을 준용하고 전문기관 조치결과 보고 등 기본방향에 따라 조치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정보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 (학부모) 상담·치유지원 등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대·내외 공개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사후관리 철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철저

<<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	
관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관리체계 구축)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 운영 등 ▪ (지속관리) 학교 내 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 1회 이상) ▪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2차 조치 등
우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집중관리)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 (병원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병의원 의뢰체계 구축·운영

- 학교 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구성·운영 등 단위학교 학생관리 역량 강화
 - 위험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전문 인력·가용자원 정보구축·활용 등)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구축·운영]

- △ (사업개요) 학생 자살, 우울, 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교육청·지역·학교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 마련
- △ (추진방법)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 역할분담, 학교 지원
- △ (추진지역) **모든 시·도 교육(지원)청**
- ※ 모든 교육(지원)청은 **자체 추진방안 마련·전체 학교에서 학생 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전문(가)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추진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병으로 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관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현황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20)」 수립·추진
 -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대책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 마련·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12월)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3월)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농염)에 대한 학생용 교육 자료(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교육청단위 모의훈련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의 원격연수과정 운영(매년) 및 교육청 담당자 대상 집합연수 실시(매년)
 - 시·도교육청은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및 감염병 국가위기상황을 가상하여 학교가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매년)

□ 추진방향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예방교육 시 교육부가 개발·보급한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

- 교원 및 교육(지원)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연수원에 교원 대상 연수 과정 개설·운영
 -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 등을 계속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의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실시 예정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 보급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 1. 1.)
 -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발생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여부를 확인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나이스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개선 추진 중(21.하)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라. 「학생감염병 예방」 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 수립 예정
- 우선은 기존 1차 종합대책을 준용해서 추진 협조
- 관내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노력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관내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구비 지원
-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역 모델이 조속히 구비될 수 있도록 관내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기반 마련 및 실적관리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연수 및 컨설팅 추진

6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기본방침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을 토대로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신종 마약류 증가, 해외유학에 따른 마약류 노출 증가 등으로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추진방향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 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6.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학교보건법」 제9조
-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가급적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연수기관에서는 교원 연수 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다. 식약처 등 전문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현황

- 학교장은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추진방향

가.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생)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교직원)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나.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교육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수만을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도록 조치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기본방침

-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현황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 건강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생활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 '15~19년,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위한 연구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20년, 시도교육청의 건의에 따라 '건강증진학교' 시도교육청 이양
 - '20년, 그간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성과 및 모델 등 정리 후 시도교육청 안내
- <참고>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 추진방향

가. 지역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 교육부 : 건강증진학교 운영실적, 사례 등 자료집 발간 보급 예정('20년 초)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다.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각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변학교로 건강증진학교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각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라.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
 - ※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16년~)

Ⅱ. 환경 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 학교 석면관리 강화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기본방침

-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현 황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및 적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정보 공유
 - 일정요건을 갖춘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16.3.23~'21.3.22.)
 -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이격, 호텔 내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 공용공간은 개방형 구조, 5년간 한시적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서울, 경기)에 위치 등
 - ※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17.9.18.)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추가('19.12.3. 공포·시행)
 - 고압가스 등의 제조·충전·저장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포함
 - ⇒ 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제외)
 -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 수립·시행('17.12.4.)
 -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 포함
- * 5개 영역(교육환경평가 내실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환경

-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인식제고) 10개 세부 실천과제 포함
- 시·도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
 -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업무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18.2.1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규제 완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9.25.)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분쇄 시설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 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의무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9.22.)
 -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 추진
 -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20.11.6.)

□ 추진방향

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2021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20.12.31.)
 - 2021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2020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는 '21.3.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제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운영 분담금 확보 적극 협조)
- 학교 인근 대규모 정비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따른 학습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 강화
 - * 시·도교육청별 주요 취약구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현장진단(교육환경평가서 효과파악) 및 컨설팅 실시(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기존 교육환경보호지원 기능 외 미세먼지, 라돈 등 학교시설 내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원기능 수행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반드시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통보
 - ※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한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 및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 기간 준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요청 →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신)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불승인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관련 해당 학교의 장이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을 직접 협의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 권고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 심의 정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 및 사후관리 이력 등 관리 철저
- 이용 편의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개선 추진('21.6월 사8)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대체(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 교체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 급 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및 잘못 고시된 경우 즉시 조치
 - ※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통합안내시스템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 하여 학교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 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보호구역제도 홍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 해제율 : '16(58.3%) → '17(50.6%) → '18(49.6%) → '19(50.2%) → '20.6(52.1%)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교육환경보호위원의 현장 확인 및 철저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조치, 민원인의 기피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적극 준수

- 교육지원청별 심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심의결과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심의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3월, 9월 예정)시 적극 협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보호구역 실태점검 시 위반업태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 학교별로 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시한 보호구역관리도 비치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 요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 「관광진흥법」 시행('16.3.23)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해당 시·도교육청(서울·경기 예정)에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건축위원회 기능 강화 등)하여 관광호텔 인·허가시 허용요건 충족여부 철저 확인
 -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인(월 1회 이상) 단속 등을 통해 학교 주변에서 불건전 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시스템 개편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 및 불법시설 현황을 공간정보를 통해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른 대국민 홍보 강화

- 새롭게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학 생	1.9	8.4	21.4	30.5	46.9
교직원·학부모	8.2	29.6	51.0	65.1	77.3

마. 교육환경보호 관련 사무의 위임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 가능(법제처 협의완료, '18.12.)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위원 임명·위촉·해임·해촉 등)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접수, 결과 통보 등)

바.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위해관리계획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현황 파악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 조치 강화(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반영, '19.4.2.)
 -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학교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참고(학생건강정책과-8369, '18.11.2)

2 학교 석면관리 강화

□ 기본방침

-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교육청별 효율적 석면관리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현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석면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조사결과 DB 구축 및 석면관리지도 작성·관리
- 학교석면건축물 철거 관리를 위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정기적 위해성 평가 실시
 - 학교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법정 교육 이수 조치 등을 통한 학교 내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고시 개정('20.7월)
 -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 수정 등
-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적정 지적 및 관리·감독 철저 주의 촉구(감사원, '20.월)
 - 석면 위해성 평가를 누락 또는 부실하게 실시한 학교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수정·보완조치하고, 소관 시·도교육청에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추진방향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 준수 철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교육 이수 현황 관리 철저
 - 최초 신고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하되, 변경신고는 인사 등의

- 사유로 석면건축안전관리인이 변경될 때 10일 이내에 교육감(장)에게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화
 -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교육부 고시 제2019-206호, 2019.12.13.)
 - * 전문대학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역할 준수 철저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관련 정보 제공 및 감시·감독 등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석면건축물관리대장) 변경(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기재내용 추가)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입력 이후 발생한 변경 내역(해체·제거, 석면지도 등)은 NEIS에 반드시 반영
 - 위해성 평가는 6개월 단위로 실시하되,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 차수 생성)에 그 결과를 기재(동일물질별 대표적인 위해성평가 결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별 실별로 작성 후 기재)
 - ※ 나이스 개편 이전까지는 법정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
 - 학교 자체 소규모 보수공사 실시에 필요한 보호장구류 등 준비
-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준수 철저('19.1.28, 5차 개정)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등급 등 공지·홍보토록 지속 안내
 - 관내 학교의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 예방대책 강구
 - 석면해체·제거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 조치방안* 강구
 -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 참고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중 석면지도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석면지도 작성상태 보완조치(석면지도 오류 여부 확인전까지는 무석면구역에 대해서도 석면함유 건축자재별 관리방안에 준하여 관리)

나. 학교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

- 석면지도 오류여부 등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 석면조사기관에서 제출한 학교별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오류, 석면조사 누락개소 확인 및 오류사항 확인 시 보완조치
 - ※ 최초 조사 시 무석면 학교, 최초 조사 이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구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치 → 확인 이전까지는 석면구역에 준하여 관리
 -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석면관리시스템(NEIS)에 반영
 -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학교 인증검토시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조사업체를 동행토록 하는 등 확인조치 강화
- 시·도교육청별 학교석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 실시) 등 우선 조치
 - * '20년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간' 등급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상구역 보수 등을 통해 '낮음'으로 관리
 - '21년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예산편성 시 석면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내화피복제 제거, 파손부위 해체·제거 또는 보수 등) 결정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관리 현황,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학교석면조사보고서 적극활용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사전설명 검토)
- 학교 석면관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학교 석면관리에 대한 학교장 인식 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 또는 연수 실시

- 학교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지도 검증 등 후속조치 방안 이행 철저('19.3)
 - 석면지도 오류여부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한 후속조치 철저(시·도교육청 차원의 1~2차 석면지도 작성상태 검증 실시)
 - ※ 20.9월 기준 전체학교의 약 56% 완료(주요 오류유형 : 조사누락 46.6%, 표기누락 28.01% 등)
 -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는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현황

- 2020. 6월 기준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1.4%인 167교임
 - 상수도 인입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 ('00) 2,146교(21.6%) → ('18.6) 273교(2.3%) → ('19.6) 242교(2.0%) → ('20.6) 167교(1.4%)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20. 6)>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전체 학교수	6,304	3,240	2,368	249	12,161	
급수시설 (%)	상수도	6,177 (98.0)	3,192 (98.5)	2,336 (98.6)	242 (97.2)	11,947 (98.2)
	지하수	101 (1.6)	41 (1.3)	19 (0.8)	6 (2.4)	167 (1.4)
	상수도+지하수	15 (0.2)	4 (0.1)	13 (0.5)	1 (0.4)	33 (0.3)
	외부공급	9 (0.1)	3 (0.1)	0 (0.0)	0 (0.0)	12 (0.1)

* 학교 수에 분교장이 포함, 상수도+지하수 공급학교는 지하수사용학교에 포함

-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매분기 1차 측정결과 초과학교)
 - ※ ('16.2분기)9.1% → ('17.2분기)4.8% → ('18.2분기)5.5% → ('19.2분기)7.9% → ('20.2분기)10.1%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및 라돈 등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및 부적정 정수기 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변경 이후 수질검사 기준 초과 정수기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세균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제기

- '20.7월 인천 관내 일부 정수장에서 유충 발견으로 동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학교의 먹는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 추진방향

가. 먹는 물의 공급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나.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급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및 별표 6의2)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저수조의 청소주기(반기 1회 이상) 및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철저, 점검일지 작성·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대상에서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대상 포함
- 먹는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2007 국정감사 지적사항)
- 수질검사 실시
 -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하여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포함
-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
 -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정체수) 실시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 급수관 세척 실시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3. 12. 9) 이행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적극 개선조치 지도

- 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안내

다. 지하수 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 4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 ※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구 분	주 기	수질검사 항목	
		일부 항목(3회/년)	전 항목(1회/년)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4 참고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 음용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 (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의 안전 확보방안 강구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14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관리 철저 등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전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라. 정수기 관리대책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 각 급 학교에서 정수기는 불안정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여 설치
 -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

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조사항목* : 총대장균군, 탁도
 -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
 -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등을 통해 청소 및 소독 주기 설정
 -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조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하고, 학교 수질관리 실태 상시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합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 조치 강구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 실시(이 경우 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 기록을 유지
 - 냉·온수기의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2019년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사용 및 관리실태 점검 철저
-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 특히, 저수조 및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및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및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마. 학교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물)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 입회하에 채수 및 봉인
 - ※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 필요
- 수질검사기관에서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관내 정수기 중 10% 이상 정수기를 대상으로 교육감(장)이 직접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매분기)
 - ※ 예) 관내 500대의 정수기가 있는 경우 50대에 대하여 연중 1회 이상 검사
-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해당 사항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
 - ※ '17년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바,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현황

- 기존 학교는 학교시설 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항목과 항목별 측정 시기 등을 구분하여 적용
 -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7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공기질 측정결과 라돈(Rn) 0.89%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08% > 총부유세균 0.05% 순으로 초과한 것으로 조사(2019년 기준)
- 신·중·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 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15. 6월, 국민권익위원회)
 - 공기질 점검을 위한 표본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과정의 통제강화,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방안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 4. 23)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등)로 확대
-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등
-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대상이 교사에서 학교 시설(교사대지, 체육관,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등)로 확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및 공기질 점검주기(연 1회 이상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단축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 강화
 - 전국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3월) 및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안내서 제작·보급(2차 개정, '20.9월)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19.11~'20.1)
 -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성 향상 및 측정결과의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

□ 추진방향

가.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조치
 -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철저('18년 이후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 운영 중)
 -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학교장 대상 특별연수 실시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교육감(장)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교육감(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점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질 점검 시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 '19.12.2.)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
 - ※ 「학교보건법」 및 하위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또는 학운위 위원(학부모 포함) 참관 등을 통한 통제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별 공기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연수 적극 추진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제출서식 개선(재측정 단계별 적합여부 확인)
 - 외기 기상상태에 따른 교실 내 미세먼지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관내 학교의 일정보이율(시·도교육청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3월)에 보다 정밀한 방법(중량법, 베타산흡수법)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실시 추진
-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 '19년~'23년 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 추진

- 학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미세먼지 유해성 평가 등을 위한 학교 선정 시 적극 협조
-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학교 시설 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나.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강화

- 「학교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준수 철저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이 확대('19.10)된 바, 공기질 점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교육감(장)이 직접 공기 질 측정을 하는 경우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정도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검사결과표 기재)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추진
 - ※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사용목적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
 - 공기 질 등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추가(기숙사, 급식실, 체육관 및 강당 등)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 철저
 - 체육관, 강당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설치 추진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0.9월)에 설치 및 관리

- 방법 등 준수 철저
 - ※ 공기정화장치 관리주기(안) : 점검 및 청소(1~2개월), 필터교체(3~6개월)
- 임대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관리업체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입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학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필터교체비용지원,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등) 검토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가동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별지 서식 활용)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독려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철저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6. 9월)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 질 측정
 - 측정항목(8개)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기숙사는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 벤젠(30 μ g/m³ 이하), 톨루엔(1,000 μ g/m³ 이하), 에틸벤젠(360 μ g/m³ 이하), 자일렌(700 μ g/m³ 이하), 스티렌(300 μ g/m³ 이하)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반드시 저감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 사용
- 학교시설 안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점검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 라돈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위해성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 냉·난방기기 위생상의 조치 강화
- 필터 등 정기적인 소모품류 교체 및 기기 청소 등을 통한 위생상 안전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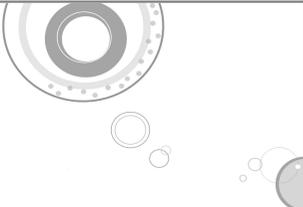
다.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 학교 소음도 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요구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 추진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 ※ 군 시설 인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안내('20.11.12., '20년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조치)
- 학교설립자의 방음대책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 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야 함
- 항공기소음 관련 방음대책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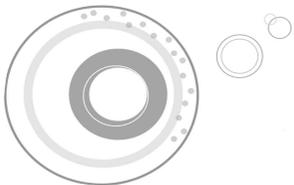
라. 기타 환경위생 관리

- 화장실 설치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특히,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2019.7월)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Ⅲ. 급 식 관 리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5.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6.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 수요자 참여 확대 및 열린 급식 운영으로 급식 만족도 향상

□ 현 황

- 2020. 2월, 전체 초·중등학교 11,835개교(100%)에서 학생 547만명 급식 실시
 - 급식종사자 71,268명 배치(영양교사 및 영양사 10,566명, 조리사 10,732명, 조리원 49,970명)
 - 전체학교의 98%(11,596교)에서 직영급식 실시, 2%(239교)에서 위탁급식 실시
- 일정 규모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21.1.30 시행)
 - ※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추진방향

가.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특히, 초·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승인
 -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법제처, '15.8.21)
-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
- 초·중등학교에서 위탁급식 시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 철저

나.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부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위촉 협조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기능 수행
-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가 주관하는 학교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다. 학교 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하고, 학교는 '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 보장 및 운영 활성화
 - ※ 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을 간사로 참여('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모니터' 활동 운영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 ※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족도 평가지표(항목) 예시자료 보급('18.3)
 - ※ 급식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16년~)
 - 급식의 질 향상과 보호자 부담경감을 위해 매 학기말 기준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매 학년도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공개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공개의 날'을 운영하여 급식과정 참관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 ※ 학교급식 대국민 홍보사이트 "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www.sfic.go.kr)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급식 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

라. 학교급식비 집행관리 철저

- 보호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전용 제한
- 급식운영비 중 보일러 및 급식기구 등 시설·설비의 유지비는 학교기본 운영비에서 집행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급식관련 기부 요구자, 금품·향응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
-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금지
 -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카드로 결제(지급)할 경우 수수료가 납품업체에 부과되어, 이는 식재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카드 결제 지양
-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철저
 -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 적극 권장
 - ※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폐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관리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 ※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참고(학생건강정책과-8479, '20.9.29.)
- 급식운영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우수교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실시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기본방침

-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
-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현황

- 학교급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며('18년 제외), 학생수는 증감 반복



- 주요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9건, 37.5%), 노로바이러스(8건, 33.3%)이며, 여름철은 병원성대장균, 봄·겨울은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발생('19년 현황 기준)
-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2차 발병률이 높아 다수의 학생에게 감염이 확산
 - ※ ('16) 6건 163명(27.2명/건) → ('17) 6건 401명(66.8명/건) → ('18) 10건 549명(54.9명/건) → ('19) 8건 505명(63.1명/건)
- 식기세척제 성분(수산화나트륨) 안전성 확보 대책 지적('13년 감사원 17년 국정감사)

□ 추진방향

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 방학 기간을 이용한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기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학기 시작 전 개·보수 완료 조치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HACCP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 재원은 시·도별 교육환경 개선비, 지역현안사업비(특교), 지자체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되, 부족예산은 추경 반영 등을 통해 확보
-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식당 공간 확보를 추진하며, 복도배식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교실배식으로 전환토록 지도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추진

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철저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학기별 1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인해 학기별 1회 점검이 어려운 경우 점검횟수 조정 가능, 이 경우 식중독 발생이력,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검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
 -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 지적사항 발견 → 시정명령(서면) → 차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및 미 이행시 징계(「학교급식법」 제22조)
- 각급 학교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종류의 비조리제품(완제품) 제조·가공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교육청 주관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 등 급식관련 시설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자 처분 강화

다.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 후 조리작업 참여 조치
 - * (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독 등 적절한 치료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함
-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폐결핵은 연 1회) 건강진단 실시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 ※ 다음 검진일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결정(예: 이번 검진일이 '20년12월1일'이라면, 다음 검진은 '21년6월1일까지 실시)
- 교육청은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식재료납품업자 등 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 교육청 단위 점검단,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전 별도 교육 실시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학생, 교직원(조리종사자 포함), 학부모 등 대상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반영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종사자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라.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 각급 학교는 매일 결석·조퇴·지각 학생수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주요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하고,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시도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 집단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에 유선 등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원인 및 오염경로 규명 노력
-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염자·접촉자에 대한 관리 및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등 환경인자 및 생활시설 관리 철저
 -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예방 및 재발방지 업무에 활용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 보존식 용기는 100g 이상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사용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마.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강화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균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균 작업 실시
-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고, 원재료 미 표시 등 부적합 제품 납품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수산화나트륨(NaOH)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유독물질’로 식기세척제로 사용 불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 [별표 1]
-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후 CP2 기록지 하단에 기록하고,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 ※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 PH 시험지법 등 잔류여부 확인검사 권장지침 : 학생건강안전과-8745('11.12.12) 참조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기본방침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심의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현황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식재료 표준체계 도입 및 현장 적용('20년~)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격정보 및 물가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년~)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정보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사이트 운영(www.sfpi.or.kr)

□ 추진방향

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 업체 권장
 - ※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 정도)된 김치류 제공 권장
-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표시대상) 농축산물(9개), 수산물(15개)

품목	표시대상(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	--

※ 미표시 및 거저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대상임

※ (농축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참조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 [원산지표시] 참조

- (표시방법) NEIS 급식시스템 출력기능 활용,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 식단표는 식사장소(식당 또는 교실) 등에 게시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활용을 의무화하여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 ※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 IT 기술 활용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 구축·적용 추진('18년~, 시범사업 추진 중)
- 시·도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 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식재료 검수요령 교육 실시

나.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 의무화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다.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준수

-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
- 적절한 가격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적용 의무화('12.9월~)
 - ※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 90% 이상, 2천~5천만원 이하는 88% 이상

- 공동구매 또는 분기단위 입찰 등으로 추정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추진
-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이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로 전환
 - ※ 입찰 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8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국조실 현장점검 건의 사항, '14.8월)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 식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및 분할 수의계약 금지

- 학교 식재료 등 물품 구매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 식재료 등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실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이용

-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분할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할발주 금지, 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마.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확산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와 경쟁입찰이 가능해져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 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 교육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 구성 →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시·도교육청은 공동구매 추진실적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6호)>
 · 가공육류 및 조리육류(식육가공품, 불고기패티), 신선 또는 냉동한 어류 및 어류 부산물(어육가공품, 새우패티, 골뱅이통조림), 해조류(조미김), 각종소스류(요리용 소스, 카레),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빵·비스킷 및 쿠키(신선한빵, 냉동빵, 말린빵, 건빵, 상온보관용빵), 파스타 및 면류(면류), 김치(총각김치), 통조림 또는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참치캔통조림)

-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물품이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공표하고 동 내용을 구매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
 - ※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매뉴얼(‘14.9월)」 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협력체계 구축
 -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14.9월)」 활용

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aT, 조달청)이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선별(색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사요청) 또는 경찰에 고발
 - 공정위 조사(수사)결과 불공정행위 확인업체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eaT 등)에 등록하여 제재조치 강화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
-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및 위생분야 합동점검 협조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공정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식재료 공급계약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은 식품위생분야 등 점검에 적극 협조

사.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유해·부정물품 납품업체 제재를 위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역학조사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제재조치 시행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월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14.9월)」 활용

-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제재조치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아.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추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 등 소비촉진 유도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생산자 및 원산지 표시(실명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방식 개선

-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前)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 (13.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산지출하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경우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등 조치

차.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식재료의 생산·유통·운반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경우 식중독 사고와 직결되므로 교육청 차원의 납품업체(대표자) 교육으로 위생수준 및 인식 제고
-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의 건전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불량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과 더불어 건전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필요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연령별로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 관리 역량 강화

□ 현황

- 2018.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식단 참고자료” 개발·보급
-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에 대한 인식 및 표기 부적정에 대한 개선 요구 (‘19년 국회 등)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2호, ’18.1.1.시행)
- 식재료 표준체계 적용 나이스(NEIS) 급식 시스템에 최신 영양정보 반영(’19년~)

□ 추진방향

가.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반영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21년)
-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영양량이 표시된 식단표는 가정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간 식단표는 식사장소(식당 또는 교실) 등에 게시

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 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 개정, ’13.11.23)
 - 위반 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종류>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계,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 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 공지방법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주간 식단표를 식사장소(식당, 교실)에 게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정보 활용 시 학교에서는 제공 식단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후 안내
-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특정식품별 알레르기 유병 학생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건강 교육 등 관리 실시

라.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수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
-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염도계’를 구입하여 활용
 -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마. 학교 우유급식 운영

-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 제고
 -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칼슘(Ca) 영양공급량 충족으로 체위향상에 기여
 - 우유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우유급식 저변확대 노력
 - ※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 학교 우유급식 운영관리 철저
 - 학생들의 올바른 우유 음용습관 형성 등을 위해 영양교사 및 영양사, 담임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
 - ※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반상태 점검 및 검수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신선도 높은 우유 제공 노력
 -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혜택 부여 및 영양공급 등을 위해 무상 우유급식 실시방안 강구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낙농진흥법」 제3조)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입찰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감사원 지적사항, '15.10월)

5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현황

-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 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부 훈령(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급 지급 규정) 제정('14.2월)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0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6355, 2019.12.10.,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교육 강화)
 -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참고)

□ 추진방향

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및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월 2회 이상)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

- ※ 학생 성장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 식생활교육을 위해 교육현황 및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단계별·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19.~)

- ※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강화(일부학교에서 외부 기관 위탁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중복 및 혼란 등 민원제기)
- 담임교사 입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운영 등 잔반 안남기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제공
- 급식현장을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 등 교육환경 마련
 - ※ (현행) '급식소', '식당' → (변경) '식생활교육관', '식생활관' 등
-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 또한, 청소년 아침결식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반영
- '식생활교육실' 운영 등 특별활동 강화
 -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을 구성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능력 배양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나.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등 식사조절 필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상담실시
 -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활용
- 급식관리실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교육청 대책)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 확인
- (학교 대책)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수립·시행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배식 조절대 비치 및 활용
 -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발생량 최소화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절감 도모
 - 학교 홈페이지, 급식계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라.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방안 강구(사립학교 포함)
- 신규 영양교사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국가차원에서 신규 영양교사 연수 운영('16~'19년 종료)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6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기본방침

-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경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현 황

-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으로 2004년부터 학교 밖에서 식사하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담당
- 학교급식비 지원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

※ '20.9월 기준, 초·중학교는 전체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전체 학년)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부 학년 실시)

□ 추진방향

가.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목표

- **【저소득층】**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농 어 촌】** 농어촌지역 초·중·고학생 전원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자녀 등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보호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급식비 포함) 지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보호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회 → 조회 결과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학교에서 지원대상자 결정('13년~)
 - 지원대상자의 급식비를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아 학교에서 무료급식 제공

- 국립학교는 저소득층자녀 등에 대한 급식지원 소요예산을 학교장 책임 하에 확보하여 지원('05년부터 이양, 시·도교육청은 행정지원 협조)
-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신학기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까지 CMS 계좌에서 일괄 인출하지 말고 유예조치 협조(학부모 민원사항)
-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비 전액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또는 지역별 급식비 지원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 → 교육청에서 학교에 급식비 예산지원 → 학교에서 무료급식 제공
 -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급식비 보호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는 급식지원비에서 보호자 부담금을 대체)
 - 급식비 지원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존감 보호 및 교육적 배려 강화

다. 자치단체의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급식지원 협조

-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결식우려 학생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지자체별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 행정협조 등 지원방안 모색
-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참여 및 학교의 급식시설 이용 요청 시 적극 협조

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체제 구축으로 급식시스템 개선
- 학교급식 현장의 급식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현 황

- 학교급식은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분야의 지원 필요
 - 학교예산의 60% 이상이 급식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 과다
- 학교급식 관련 현안(위생·안전사고, 불량 식재료 납품, 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응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 역량강화 필요

□ 추진방향

가.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지원 체제구축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업무 전문 담당인력 보강
 - 급식위생·안전점검 등 식중독 예방관리, 영양관리 및 교육, 식재료 구매·계약, 급식비 지원 등 체계적인 업무 지원
- 학교급식 위생 및 경영관리지원기구 운영방안 강구
 - 학교급식 현장에 필요한 급식관리기술 개발·보급 및 위생·안전점검, 급식 운영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지원 강화
-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정보센터 설치·운영
 -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의문사항 등 질의응답

나.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행정인력 보강

-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

-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위생·안전점검, 식중독 예방 등 학교급식 현안과 안전관리 등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보강방안 강구
- 또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영양교육 전문직을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명씩 배치 협조('14년,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전담직원 배치
 - 공동구매 활성화, 불공정행위 및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 급식지원센터 지도 등 식재료 구매·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체제 마련 필요
 - 급식업무 담당부서에 계약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우선 배치 하도록 정원조정 및 인사에 반영('13년 감사원 지적사항)

다.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에 대한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전환 추진
 - 시간외 근무 시 수당지급,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부여
 - ※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업무간소화 등 행정지원 방안강구 및 적정인원 배치와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급식인력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
- 학교회계직원 배치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할 경우는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고려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시행
 -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하다고 지적('19년,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특히,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및 인건비 산정 기초에 실제 급식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등을 포함하도록 조치

-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에도 조리인력 적정배치 및 식기세척기·다기능 오븐기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지원
-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질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교육청 단위 통합운영 권장)
 - ※ 병가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가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대체할 인원이 없어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16. 국정감사 지적사항)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라. 학교급식 운영 지원

- 학교급식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조직·운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NEIS 급식시스템 개선협의회」 운영 협조
 - 급식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식품코드 신규 등록 및 식품성분표 개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기능개선 필요사항 검토와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 운영 적극 협조
 - ※ 식재료 표준체계 적용 나이스(NEIS) 급식 시스템 식품코드 관리 위원회 운영('20년~)

IV.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2. 보고 목록
3. 보고 서식
 - ※ 참고자료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021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교보건 전반(흡연·음주 예방, 개인위생, 아토피·천식예방, 올바른 성행태, 식품관, 정신건강, 신체활동, 중독예방, 환경관리 등)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내 제출 받아 서류심사 후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2021년 생명사랑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생명존중 참여 캠페인을 통한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 **(공모분야)** 동영상, 이모티콘, 사진 등
 - **(참가대상)** 학생, 교직원 등
 - **(응모방법)** 공모기한 내 제출받아 서류심사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 공모시기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021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식품안전과 질 높은 급식 제공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므로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개발·발굴하여 단위학교에 보급·적용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내용 : 학교급식 운영관리, 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 응모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
 - 응모방법 : 해당교육청에서 사전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서류심사 및 필요시 발표심사 등 실시
- ※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여 우수사례 공모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2021년 국가차원의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

- **(목적)**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으로 학부모 급식현장 참여 및 의견수렴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급식 만족도 제고
- **(운영 방법)**
 - 구성 :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 50여명
 - 일정 : 발대식(4월~) → 모니터활동 및 협의회(4월~11월) → 결과나눔회(12월)
 - 내용 : 학교급식 전반(운영,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주제별 모니터링, 학교 급식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의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우수학교 현장 방문 계획 수립 등 협조

□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 **(목적)** '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및 학생 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에 유공자 등을 발굴·표창하여 관계자 사기진작 및 학생건강 정책의 발전에 기여
- **(대상)** 학생 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추진성과가 탁월한 우수기관(학교, 단체) 및 유공자

-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 표창수량 : 미정(별도 통보 예정)

○ (일정) '21. 11월 대상자 추천, '21. 12월 표창수여

□ 학생 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 추진(상황 고려)

- (목적) 학교건강증진 관련(건강·환경·급식관리 등) 해외선진지 견학(연수)을 통해 제반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 (기본방침) 연수목적에 고려하여 학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연수대상자 선정 및 소요예산 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충실한 연수를 위하여 사전과제 부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계획) 시·도교육청의 참여의사 확인 후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결정 예정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회 개최(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21년 워크숍 및 연수회 추진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보고 목록

[건강관리 분야]

순번	보고 사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2. 2. 7.	서식 제1호	
2	학생 건강증진교육 추진 현황	2022. 2. 7.	서식 제2호	
3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	2022. 1. 8.	서식 제3호	엑셀서식 보고
4	성교육 실시 현황	2022. 1. 8.	서식 제4호	엑셀서식 보고
5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사안 발생시	서식 제5호	
6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1. 5. 15	서식 제6호	

[환경관리 분야]

순번	보고사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2021. 7. 16 2021. 12. 17	서식 제1호	NEIS 보고 병행
2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	서식 제2호	NEIS 보고 병행
3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2021. 7. 16 2021. 12. 17	서식 제3호	NEIS 보고 병행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2021. 6. 30	서식 제4호	NEIS 보고 병행
5	2020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2022. 2. 28	서식 제5호	고발요령 및 절차 <참고자료1 참조>

[급식관리 분야]

순번	보고사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2022. 3.21.	서식 제1호	국립학교 포함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	2022. 3.21.	서식 제2호	국립학교 포함
3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① 인지즉시: 유선보고 ② 역학조사 실시일: 서면보고	서식 제3호	대책협의 결과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안은 서면보고 생략가능
4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	서식 제4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3. 보고 서식

【건강관리 분야】

[서식 제1호]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1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1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되, '21년 시도별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

[서식 제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서식 제3호]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엑셀서식 보고)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급별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시간) 이상 실시 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청명	전체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계								
	보건교사 배치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계									

- * 전체학교 수 : 시도교육청 내 총 학교수
- *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 시수**
-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 수업 시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수를 작성하되, 보건교사 미배치학교는 인근학교 또는 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지원을 받아 실시한 보건교육에 한하여 기재
- * 보건교육 실시 해당 기간: 당해 학년도

2. '보건' 과목 선택 학교수

교육 청명	중학교(A)		고등학교(B)		특수학교(C)		계 (A+B+C)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전체	선택

- *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학교수
- * 제출기한 '22.1.8.

[서식 제4호]

성교육 실시 현황(엑셀서식 보고)

1. 성교육 담당자 지정 현황 및 계획수립 유무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과목별 담당교사 유무(1개교당 중복표시가능)						학교 성교육 계획수립 유무		
		보건	체육	기술· 가정	초등 교육	기타	계	수립	미수립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초										
중										
고										
계										

- * 성교육 담당교사 유무
 - 성교육 담당교사란, 업무분장표에 '성교육'으로 명시되어 실제 성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공과목에 기재(초등교사는 초등교육에 기재)
 - 담당교사 숫자를 기재하지 말고, 유무 여부를 기재
 - 담당교사 계는 담당교사 '유' 의 합
- *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유무
 - 전체학교수(시도교육청 내 총 학교수)= 수립+미수립
 - '교육계획서 포함'은 '수립'에 기입한 학교 중 성교육계획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재

2. 성교육 실시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 * 성교육 실시 해당기간: 당해 학년도
- * 학년별 시수 = 해당 학년 성교육 실시 총시수 ÷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수

3. 성교육관련 교원 연수 개설 현황(시도교육청만 작성)

시도교육청명	이수시간별 직무연수 개설 과정 수			합계	기타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60미만	60시간 이상		

- * 기타 : 타 연수과정에 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연수과정 수, '합계'에는 미포함
- * 제출기한 '22.1.8.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19. 00. 00(), 00교육청 >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니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18.1.10	결핵	1	학생	'19.1.3	'19.1.3	'19.1.25
'18.1.12	백일해	30	학생	'19.1.3 / '19.1.11	'19.1.11	미정
'18.2.22	결핵	1	교원	해당없음	'19.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19.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지표환자 담임
		학생	3-1	3		
		교원	2-1 담임	1		
'19.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19.1.3 / '19.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교 백일해 환자의 황제 자매
'19.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제6호]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청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1.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1.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제1호] **【환경관리 분야】**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 _____ 교육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체육관·강당						
기숙사						
점 검 학교수	실내환경					
	공 기 질					
	일반환경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 고시 제 2019-202호) 제2호의 ‘실내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기 관 (일반)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교사 및 급식시설)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1차 최중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중	적합	초과
PM10 (µg/m³)												
PM2.5 (µg/m³)												
CO₂ (ppm)												
HCHO (µg/m³)												
총부유세균(CFU/m³)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₂ (ppm)												
Rn (Bq/m³)												
TVOC (µg/m³)												
석 먼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m²)												

라. 공기질 측정결과(체육관·강당)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mu\text{g}/\text{m}^3$)										

마. 공기질 측정결과(기숙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Rn (Bq/m)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 작성요령 : 폼알데하이드(HCHO)는 점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측정결과를 작성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체육관·강당					
기숙사					
점 검 학교수	3월 개교				
	9월 개교				
	계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Rn (Bq/m)										

※ 특별점검, 신축학교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서식 제2호]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분기 / 서면, NEIS 병행)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A)					
	지하수(B)					
	상수도+지하수(C)					
	외부공급(D)					
	계(E)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 지하수는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만 기재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상수도 이용교	대상학교수(A)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지하수 이용교	대상학교수(B)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대상학교수(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계	대상학교수(D)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에 기재된 학교수와 동일하게 작성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or 정기	대상 학교수(A)					
	검사 학교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 [참고] 정수기 특별점검결과(분기)

구분		초	중	고	각종특수	합계
() 분기	특별점검 학교					
	특별점검 정수기수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필요시 후속조치 등 작성(수질검사시기 조정, 청소 철저, 설치장소 변경 등)

[서식 제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 실시

구 분	실시대상 학 교 수	점검실시 횟수	참 여 원	활동 내용(건수)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						
	계						
누 계							

※ 작성요령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실시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모든 학교
- 실시횟수 : 교육감이 정한 횟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중복 기재)
- 활동내용 :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구 분	통보건수	위반사례 통보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시·군·구청
반기	서면통보				
	유선통보				
	계				
누 계					

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실적

구 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전체교육환경보호위원 현장방문건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반기						
누 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 분	행정공무원	경 찰	교육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기					
누 계					

4-2. 적발내용

구 분	퇴폐·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목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기					
누 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설 등	노 래 연습장	만화 대여업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기								
누 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 분	고 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기타	계
반기						
누 계						

※ 교육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4-5. 퇴폐·음란물 압수/폐기 실적

구 분	게임관련시설		만화대여업		비디오물관련시설		문구점/기타		계	
	업소수	접수	업소수	접수	업소수	접수	업소수	접수	업소수	접수
반기										
누 계										

※ 4-2, 4-3, 4-4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유예기간 초과시설)

5-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3	도축·화장·불안시설, 자연장지															
4	폐기물 수집장															
5	유흥·단란주점															
6	호 텔															
7	여 관															
8	여인숙															
9	당구장															
10	게임시설 등															
11	만화대여업															
소계('95년말까지)																
12	무도화원/무도장															
13	노래연습장															
14	담배자판기															
소계('98년말까지)																
15	전화방															
16	성기구취급업소															
소계(즉시)																
17	비디오물감상실															
소계('02년말까지)																
18	멀티게임장(PC)															
소계('04년말까지)																
19	경륜·경정장															
소계('09년말까지)																
20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21	신변중 업소															
소계('11.7.20까지)																
합 계																

※ 현재 미정비 잔여시설에 대하여 작성(6-1에 따른 무단 설치시설은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확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확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정확요청 건 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계
반기								
누 계								

※ 정확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연번	고발일자	고발자 (기관명)	고발처	고발내용		
				업소명	업주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1995.12.31							
1998.12.31							
즉시정비							
2002.12.31							
2004.12.31							
2008.08.04							
2009.12.31							
2011.07.20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모든 지정된 보고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서식안의 내용은 한글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요망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보고기일 내에 우리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무단 설치시설)

6-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 화장, 봉안 자연장지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중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17	당구장															
18	무도학원															
19	사행행위장 등															
20	노래연습장															
21	비디오감상실업															
22	유흥·단란주점															
23	숙박업 호텔업															
24	만화대여업															
25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합 계																

※ 5-1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시설은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확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확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계
	정확요청 건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반기								
누계								

※ 정확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서식 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서면, 6.30기준)

기관명 :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 화장, 봉안 자연장지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중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17	당구장															
18	무도학원															
19	사행행위장 등															
20	노래연습장															
21	비디오감상실업															
22	유흥·단란주점															
23	숙박업 호텔업															
24	만화대여업															
25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합 계																

※ 작성요령

-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만 작성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금지시설에서 해제 결정된 업소만을 기재(단, 남골시설의 경우 실처를 인정받은 경우는 포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 화장 봉안 자연장지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약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17	당구장														
18	무도학원														
19	사행행위장 등														
20	노래연습장														
21	비디오감상실업														
22	유흥·단란주점														
23	숙박업 호텔업														
24	만화대여업														
25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요령

- [서식 제3호]의 5-1, 6-1에 따른 이전·폐쇄업소 및 무단 설치시설 현황(2분기)을 합한 시설수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5호]

2020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1. 소송(심판) 현황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건수					
인용건수					

※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최초심이 2017년 이전이라도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용건수는 교육청 기준으로 기재

2. 금지행위 및 시설별 소송(심판) 건수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PC방										
당구장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가스관련 제조소·저장소										
숙박시설										
기타										
계										

【서식 제1호】 **【급식관리 분야】**

2021학년도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급식시설 개선 예산지원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개선 학교수					
예산 지원액(천원)					

2. 위생·안전점검 실적(1학기)

구 분		점검학교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직영	학교수						
	비율(%)	100					
위탁	학교수						
	비율(%)	100					

3. 학교급식 위생교육·연수실적

구 분	교직원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식재료 공급업체	학부모기타	계
교육 연수 인원						

4. 학부모 식재료 검수 등 모니터링 참여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참여 학교수					
참여 인원수					

※ 작성기준 : 2021학년도('21.3.1~'22.2.28)

※ 보고시기 : 2022. 3. 21.까지

【서식 제2호】

2021학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처리방법 및 비용계산 방법 현황

구분	학교수 (교)	처리방법				비용계산 방법			
		위탁업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기타	합계	정액제	종량제	무상 처리	합계
초									
중									
고									
계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 정액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정액으로 계약하고 처리(법적용어 아님)

2. 처리량 및 처리 비용 현황

구분	학교수	급식 제공 인원수	처리량(단위:kg)			처리비용(단위:천원)		
			총 처리량	1교당 평균 처리량	1인당 평균 처리량	총 처리비용	1교당 평균 처리비용	1인당 평균 처리비용
초								
중								
고								
계								

※ 급식제공 인원수 : 실제로 급식을 실시하는 1일 평균 인원 수(병설유치원, 교직원, 비조리교, 2~3식 등 인원 포함)

※ 작성기준 : 2021학년도('21.3.1~'22.2.28)

※ 보고시기 : 2022. 3. 21.까지

【서식 제3호】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21.03.14. ○○○○교육청)

<요약>

'21.3.14(월),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규모		영양(교)사
			학생수	교직원수	
교육부고등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500	45	주아무개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 3.14.(월) 10: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 3.14.(월) 11: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 (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00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김길동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사례 정의:
- 학생 환자 현황('21.3.14. 17시 기준)

구분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수							
환자수							

- 일일상황보고(작성예시)

구분	환자수(명)		치료중 환자수(명)				비고
	누적	신규	입원	입원	투약/자가	합계	
03월 14일	10	10	1	4	3	8	발생인지일
03월 15일	12	2	0	3	2	5	
03월 16일	13	1	0	1	1	2	
03월 17일	13	0	0	0	1	1	추가환자 없음

※ 매일 17시 기준으로 환자 및 치료 현황을 엑셀로 작성(별도서식 제공)하여 교육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2일 연속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면 보고 종료

5. 참고사항

- 언론취재 :
- 기타 :

【서식 제4호】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 ① 고발의뢰서
 - ② 고발장
 -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21. . . .

○ ○ 교 육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2]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 업 주 명 :
- 영업장소 :

- 주민등록번호 :

2021. .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3】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1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미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1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참고자료 6】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폐기물 종류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멍게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과일류	복숭아, 자두,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참고자료 7】

2021년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작성요령

□ 추진근거 및 수립절차

- **(추진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 **(수립절차)**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 수립된 시행계획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포함내용 및 작성요령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 세부과제별 실시계획 수립
-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계획
 - 자원 조달계획은 세부과제별 실시계획의 예산현황에 반영하여 기재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 추가 가능

□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20. 12. 31.(목)
- 제출서식 : 붙임 2 서식 사용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송부

붙임 1 세부추진과제 현황(시행계획 반영과제)

세 부 추 진 과 제	작성 대상	비고
1.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1-1. 교육환경평가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교육환경평가대상 확대·강화 추진	비대상	
○ 교육환경평가항목 객관화·구체화	비대상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일부 대상	
1-2. 교육환경평가 내실유도 및 체계적 관리		
○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질 관리 강화	비대상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사항 관리 강화	대상	
2.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		
2-1.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운영 강화	비대상	
○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기능 확대	일부 대상	
2-2.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대상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상	
3. 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제고		
3-1.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업무 기능 강화		
○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 기능 강화	대상	
○ 담당자 업무 연속성 확보	대상	
3-2. 교육환경보호 인력 역량 강화		
○ 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대상	
○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대상	
○ 교육환경보호 운영 안내서(매뉴얼) 제작·보급	대상	
4.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4-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개편	비대상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콘텐츠 내실화 및 다양화	대상	
4-2.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확대		
○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현황 공개 확대	대상	
○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 도입	비대상	
5.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인식제고		
5-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황 일제조사 및 오류정보 보완	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관리 및 조치강화	대상	
5-2.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강화	대상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대상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인식도 조사	비대상	

붙임 2 2021년도 시행계획 (작성서식)

<총괄현황 작성서식>

I. 추진배경

○

II. 지역 현안 문제점

○

III. 추진방향(해결방안)

○

IV. 2021년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성과지표

'19년 성과지표 명	단위	'20 목표	비고

V. 예산 현황

사업명	자원(백만원)				비고
	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기타	

<세부사업 작성서식>

<input type="checkbox"/> 관리번호	1-2-2
<input type="checkbox"/> 세부과제명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주관부서 (협조부서)	00교육청 00과 000사무관/주무관(00-000-0000) (000과 000사무관/주무관)

1. 사업목적

-
-
-
- *

2. '21년도 주요 추진내용

-
-
-
- *

3. 세부 추진일정

-
-
-
- *

4. 투자계획

(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내용	계획(백만원)			
		총계	지방비		기타
			보통	특별	

문서 서식 준수사항

- ◆ 편집용지 여백: 좌·우 각 20mm, 위 20mm 및 아래 15mm, 머리말·꼬리말 각 15mm
- ◆ 줄간격: 가급적 160% 준수
- ◆ 주요내용의 글머리 및 글자모양
 - 1. : 휴먼명조, 글자크기 16pt,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 : 휴먼명조, 글자크기 16pt,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 : 휴먼명조, 글자크기 15pt, 장평 100%, 자간 0%
 - : 휴먼명조, 글자크기 15pt, 장평 100%, 자간 0%
 - * : HY중고딕, 글자크기 13pt, 장평 100%, 자간 0%
- ◆ 자체 추진사업 연번은 6-1-1 등으로 기재

【참고자료 8】

2021년도 주요 변경내용

[보건 분야]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2. 학교 성교육 내 실화	<input type="checkbox"/> 기본방침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p.5) <input type="checkbox"/> 기본방침 ○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발달 단계에 알맞으며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input type="checkbox"/> 추진 근거 및 현황	<input type="checkbox"/> 추진 근거 및 경과 - 사회관계장관회의(‘20.7.29.,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결과 디지털성범죄가·피해 예방 내용 반영	
	<input type="checkbox"/>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지도 ○ 담당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p.6) <input type="checkbox"/> 성교육 시 유의사항 ○ 교사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여 지도하며,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고, 학생의 관심과 발달 수준, 학교의 실태와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 - 담당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이 아닌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지도 ○ 강의식 지식전달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활용하여 학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생들의 참여기회 확대	
	적용예시표	<삭제>	(p.7)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p.8)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p.8)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 <참고>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년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다음학년도('21)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관련 안내사항
5.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p.16) 라.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16~’20)」 및 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p.16) 라. 「학생감염병 예방」 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 수립 예정 - 우선은 기존 1차 종합대책을 준용하여 추진 협조	코로나19 상황으로 1차 종합대책 우선준용

※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은 주요 변경 내용에서 생략

[환경 분야]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추가>	(p.26) <input type="checkbox"/> 현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설치규제 완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9.25.)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분쇄 시설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 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의무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9.22.) -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 추진 -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20.11.6)	교육환경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추가>	○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의무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9.22.) -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추가>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관련 해당 학교의 장이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보호를 위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추가>	한 대책을 직접 협의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협의체 구성 권고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 및 사후관리 이력 등 관리 철저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추가>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 시스템 개편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 업소 및 불법시설 현황을 공간정보를 통해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2. 학교 석면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추가>	(p.31) <input type="checkbox"/> 현황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고시 개정('20.7월) -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 수정 등 ○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적정 지적 및 관리·감독 철저 주의 촉구(감시원, '20.월) - 석면 위해성 평가를 누락 또는 부실하게 실시한 학교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수정·보완조치하고, 소관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시·도교육청에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 준수 철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 준수 철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교육 이수 현황 관리 철저	교육청 차원의 교육이수 현황 관리 철저 안내
	나. 학교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 ○ 학교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지도 검증 등 후속 조치 방안 이행 철저('19.3) - 석면지도 오류여부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한 후속 조치 철저(시·도교육청 차원의 1~2차 석면지도 작성상태 검증 실시) ※ <추가>	나. 학교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 ○ 학교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지도 검증 등 후속 조치 방안 이행 철저('19.3) - 석면지도 오류여부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한 후속 조치 철저(시·도교육청 차원의 1~2차 석면지도 작성상태 검증 실시) ※ 20.9월 기준 전체학교의 약 56% 완료(주요 오류유형 : 조사누락 46.6%, 표기누락 28.01% 등)	검증조치 독려
3.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추가>	(p.36) <input type="checkbox"/> 현황 ○ '20.7월 인천 관내 일부 정수장에서 유충 발견으로 동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학교의 먹는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4. 교사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추가>	(p.41) <input type="checkbox"/> 현황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교실	학교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4 / 4.23) -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대상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대지, 체육장,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등)로 확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및 공기질 점검주기(연 1회 이상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단축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 강화 - 전국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3월) 및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안내서 제작·보급(2차 개정, '20.9월)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19.11~'20.1)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성 향상 및 측정결과와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	반영
	<추가>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가. 교사(校舎)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교사(校舎)내 환경위생관	<input type="checkbox"/> 추진방향 가. 교사(校舎)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교사(校舎)내 환경위생관	감사원 감사결과 안내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교사(校舍)내의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소속 교직원 1인이 전담하지 않도록 복수지정)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교육감(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 <추가>	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교육감(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점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학교 행정부담 완화 차원의 교육청 지원강화
	나. 교사내 공기질 관리강화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철저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일반교실 중 '19년 내 설치하지 못한 교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설치 완료(일반교실 외 특별교실 및 관리실 등은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 추진) <추가>	나. 교사내 공기질 관리강화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 철저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0.9월)에 설치 및 관리방법 등 준수 철저 ※ 공기정화장치 관리 주기(안) : 점검 및 청소(1~2개월), 필터교체(3~6개월)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독려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철저	공기정화 장치 설치 완료 ('20.3월)
	<추가>	라. 기타 환경위생 관리 ○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여가부 특정성별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특히,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 여성가족부 특성성별 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2019.8월)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20.8월)

※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은 주요 변경 내용에서 생략

[급식 분야]

구 분	2020년도 주요내용	2021년도 변경내용	비 고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p.49) □ 기본방침 및 현황	(p.50) <자구 및 현황 수정>	<현행화>
	(p.50) 다. 학교 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또는 급식소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p.51) 다.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급식소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변경>
	(p.52)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 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p.52) 마.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 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한시적 변경 안내 참고(학생 건강정책과-8479, '20.9.29.)	<추가>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p.53) □ 현 황	(p.53) <자구 및 현황 수정>	<현행화>
	(p.54) 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철저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학기별 1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p.54) 나.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학기별 1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인해 학기별 1회 점검이 어려운 경우 점검횟수 조정 가능, 이 경우 식중독 발생이력,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검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재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미흡학교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p.55) 다.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교육청은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급식 점검단, 식재료납품업자 등 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p.55) 다. ○ 교육청은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식재료납품업자 등 급식 관계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교육청 단위 점검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전 별도 교육 실시	<재구성>
	(p.55) 라.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역학 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p.56) 라.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소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보존식 용기는 100g 이상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에 채워서 보관	<재구성>
	(p.56) 마.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강화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균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115호)의 기준 준수 - 세척제 및 행균보조제는 용법에 맞게 사용하며, 식기 등 급	(p.56) 마.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균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115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재구성>

	<p>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균 작업 실시</p> <p>○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행균 기능이 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 도어형 또는 1탱크형 사용학교는 특히 행균 작업 강화 등 개선방안 강구</p>	<p>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균 작업 실시</p> <p><삭제></p>	<삭제>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p>(p.57)</p> <p><input type="checkbox"/> 기본방침 및 현황</p>	(p.57)	<자구 및 현황 수정>	<현행화>
	<p>(p.58)</p> <p>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p> <p>○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p> <p>- (표시대상) 농축수산물(9개), 수산물(12개)</p>	(p.58) <p>가.</p> <p>○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p> <p>- (표시대상) 농축수산물(9개), 수산물(15개)</p>	<현행화>	<현행화>
	<p>(p.60)</p> <p>마.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확산</p> <p><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52호)></p>	(p.60) <p>마.</p> <p><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6호)></p>	<현행화>	<현행화>
	<p>(p.62)</p> <p>아.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p> <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이용 권장</p> <p>-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지원, 업체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유통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p>	(p.62) <p>아.</p> <p><삭제></p>	<해당 사업 종료>	<해당 사업 종료>
4. 학교급식 영양 관리 강화	<p>(p.64)</p>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p.64)	<현황 수정>	<현행화>
	<p>(p.64)</p> <p>가.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p> <p>○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p> <p>※ 변화되는 학생들의 체위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개정 추진('20년)</p>	(p.64) <p>가.</p> <p>○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p> <p>※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반영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 ('21년)</p>	<현행화>	<현행화>

	<p>(p.65)</p> <p>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p>	(p.65)	<자구 수정>	<현행화>	
	<p>(p.65-66)</p> <p>라.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p>	(p.65)	<자구 수정>	<변경>	
	<p>(p.66)</p> <p>마. 학교 우유급식 운영</p>	(p.66)	<자구 수정>	<변경>	
5.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p>(p.68)</p> <p>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p> <p>○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p>	(p.67) <p>가.</p> <p>○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p> <p>- 또한, 청소년 아침결식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p>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6.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 지원	(p.70)	<input type="checkbox"/> 현 황	(p.70)	<현황 수정 >
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해지지원 강화	<p>(p.73)</p> <p>나.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행정 인력 보강</p> <p>○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p> <p>- 또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영양 교육 전문직을 사·도교육청별로 최소 1명씩 배치 협조(‘14년 국정감사 요구사항)</p>	(p.73) <p>나.</p> <p>○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p> <p>- 또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영양 교육 전문직을 사·도교육청별로 최소 1명씩 배치 협조(‘14년,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p>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p>(p.73)</p> <p>다.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p> <p>○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p> <p>-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시행</p> <p>※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하다고 지적(‘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p>	(p.73) <p>다.</p> <p>○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p> <p>-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시행</p> <p>※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하다고 지적(‘19년,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p>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p>(p.74)</p> <p>라. 학교급식 운영개선 및 연구 활동 지원</p>	(p.74) <p>라. 학교급식 운영 지원</p>	<자구 수정>	<변경>	

IV.행정사항	(p.105) [서식1] 2020학년도 급식 위생 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2. 위생·안전점검실적 가. 상반기 / 나. 하반기	(p.104) [서식1] 2021학년도 급식 위생 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2. 위생·안전점검실적(1학기)	<변경>
	(p.106~109) [서식2~4호]	(p.105~108)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현행화>